

형사소송법

1.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으로 산입한다.
-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의거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고, 이러한 결정은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④ 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다.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 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A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 ② A가 체포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고 할 때, 만약 甲이 흥기를 꺼내 폭력으로 대항하여 甲을 실력으로 제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A가 甲을 제압하고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
- ③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④ A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甲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체포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B의 구속영장 청구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경우, A는 구속영장에 의해 甲이 구속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甲을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여도 검사는 이를 환부할 필요가 없다.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6.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할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환부를 받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8. 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그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혈액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9. 혐의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유형과 결정 이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권없음 - 고소·고발사건의 사안의 경중, 분쟁의 종국적 해결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죄가 안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③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④ 각하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10.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 ②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 ③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 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④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 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甲, 乙간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각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 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4.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장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15.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인 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 ④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1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탄핵증거에 대해서는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④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정에서 행한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18.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원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경찰에서의 자술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은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감정 중에서 그 어느 것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1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 공판절차,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 ②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0.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 (1) $\neg$, $\square$
- (2) L , $\square$
- (3) $\neg$, L , $\square$
- (4) $\square$, $\square$

21. 공소제기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 서만 공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 ③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2.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고인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3.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 경까지 사이에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마약투약범죄는 그 특성상 공소사실의 일부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중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방조범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방조의 사실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공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④ 저작권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징은 인정 될 수 있다.

2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 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5.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③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라 할 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적안정성 및 방어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6.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
- ②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재감자가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송달을 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 ④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27.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 ④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유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8.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9. 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0.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②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31.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3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3.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법원이 공모나 모의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해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또는 실행방법, 각자 행위의 분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판시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정도는 판결이유에서 밝혀야 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판결 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고 또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도 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판결이다.

34.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배임증재로 소비한 금원은 횡령한 금원의 단순소비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③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도 미친다.
-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35.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이라는 상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된다.
- ④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형이 되어야 한다.
-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 ④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7.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참여,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③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38.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 할 수 없다.
- ②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구류·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 ③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9.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 희망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40.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